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기술의 개념 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보완 등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13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 확대 등	3
2.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9
3. 환경산업협회,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관련 규정 정비 등	17
4. 사후관리 대상 추가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등	27
※ 참고자료	33
1. 개정 조항 관련 사업 개요	3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7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함(안 제2조).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신설함(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사업화·경영 컨설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수정함(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3항·제4항 신설 등).

환경전문공사업 운영 시 소상공인 대상 지정취소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점검·자료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라.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환경부장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상황에 맞추어 위탁 기관과 내용의 추가·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 확대 등(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가하는 등 목적 규정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2조는 ① “환경기술”의 정의를 산업 종류 나열방식에서 관련 법에 명기된 분류 인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② “환경산업”의 범위에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하는 등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③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용역을 생산하는 등의 활동을 “사업화”의 정의로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3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u>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u> 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u>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개발, 보급을 지원</u> ----- ----- <u>환경을 관리·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u> 하여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현행	개정안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이나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저감·관리·처리·감시·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현행	개정안
<u>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u> <u>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u> <u>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u> <u>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 방지 기술</u> <u>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u> 2. (생략)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u>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u>	<u>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u> 2. (현행과 같음)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u>가.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재료와 제품을 생산·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u> <u>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u> <u>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u>

현행	개정안
<u>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u> 나. <u>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u> 다. <u>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u> 라. <u>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u> <신 설> 4. ~ 7. (생략) <신 설>	<u>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u> 3의2. <u>“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생산 또는 공급·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u>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현행	개정안
제3조 (생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안 제2조제1호는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등을 추가하고,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기술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환경기술 정의 개정에 따른 범위 비교]

현행		개정안	
자정능력의 향상, 피해유발요인 억제, 환경오염 사전 예방·감소, 오염·훼손된 환경 복원, 환경 보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		다음 각목의 기술이나 이를 응용·활용하는 기술	
가	환경오염물질 감소·처리	가	환경오염예방·저감·관리·처리·감시·측정·분석
	소음·진동 방지		빛공해(환경정책기본법)
나	환경오염 예방·감소	나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 유발 억제 제품	다	생물자원 지속가능 이용(생물다양성법)
	재활용·회수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기술법)
다	자연환경 보전·복원·개선	마	자원순환
	환경위해성평가 및 관리		폐기물 발생 억제(순환경제사회법)
	환경영향평가	바	수질·수생태
라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측정·분석		수량(홍수 방지 가뭄 예측 등)(물산업진흥법)
마	상수도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사	유해화학물질 관리(화학물질관리법)
바	실용화(응용·활용)	아	대통령령

* : 추가된 범위

※ 출처: 환경부

② 안 제2조제3호는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재료와 제품을 생산·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

이며, 이는 환경산업의 범위를 환경기술과 연계하여 규정하려는 취지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해당 산업의 일부 공정에 환경기술을 활용한 경우(예: 공장에 집진기¹⁾를 설치한 제조업자, 축사에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한 축산업자 등)도 환경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환경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산업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③ 안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동 법률의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법률이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한 「환경정책기본법」²⁾을 구체화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이라는 특정한 분야의 진흥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1) 집진기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걸러내어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로, 주로 산업 현장,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대기 오염을 줄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함.

2)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안 제6조는 ①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②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관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③ 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³⁾.

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은 각각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7조는 정의 규정에서 실용화의 개념을 삭제(안 제2조제1호)함에 따라 실용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6은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는 실태조사 협조 요청 대상에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4는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안 제6조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등을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중이며,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을 통하여 펀드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계정에 출자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6. 환경산업체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

현행	개정안
<u>기술 지도</u> 4. <u>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u> 5. <u>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u>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u>환경개선특별회계</u>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u>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u>과학기술진흥기금</u> <신 설>	<u>술보증기금</u> 2. 「<u>신용보증기금법</u>」에 따른 <u>신용보증기금</u> ④ <u>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u>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u> 1.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1호에 따른 <u>벤처투자조합</u>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u>벤처투자모태조합</u> 2. <u>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u> ⑥ <u>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u> 제6조의2(<u>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u>) <u>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 설>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용자 2. 창업·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용자 2. 사업화·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4.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5.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 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 ⑤ (생략)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u>기술검증</u>, <u>시범사업</u> 및 <u>환경기술 실용화</u>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3. <u>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u> ⑦ (생략)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① (생략) ②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⑥ ----- ----- ----- ----- <u>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u> ----- ----- <u>제6조제2항</u>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1. 「<u>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u>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u> 2. <u>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사업 지원</u>

현행	개정안
③ ~ ⑥ (생략)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관련 공공기관</u>,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u>환경산업</u>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u>개최</u>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u>사업화 지원</u>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u>진출 지원</u>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관계 행정기관</u>, 공공기관-----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 <u>환경산업체</u>-----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u>

현행	개정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설치·운영 지원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5. ----- ----- -- 역량강화 지원
<신 설>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① 안 제6조는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확대, 보증지원 사업 및 모태조합 등에 대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을 통하여 펀드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계정에 출자하고 있으며, 2025년에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임⁴⁾.

②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은 각각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환경부가 수행 중인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지원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4) 참고자료 1. 개정 조항 관련 사업 개요

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7조의6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의 대상을 우수환경산업체로 명시하고 있음⁵⁾.

③ 안 제7조의6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④ 안 제13조의4제1항제4호는 현행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 지원”에 대한 사항을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 사무소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⁶⁾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4제1항제6호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환경산업체의 수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을 통하여 ‘해외 현지사무소 운영’사업(2024년 예산 19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3. 환경산업협회,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관련 규정 정비 등(안 제11조 및 제15조 등)

안 제11조는 환경산업체⁷⁾가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민관협력 및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는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업무의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업정지 사유인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4는 비영리법인 등도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범위를 확대(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하고, “실용화”를 “사업화”로 용어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6은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의

7) 안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 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 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5. (생략) ④ ⑤ (생략)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 한 발전을 위하여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의 추진 5.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6. 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 음) ④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u>특별시장·광</u>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 ----- ----- ----- ----- <u>특별시장·광</u>

현행	개정안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6. ~ 9. (생략) ⑥ (생략) <신설>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 9.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현행	개정안
	<u>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u>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른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① 안 제11조는 환경산업협회의 회원이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 회사 및 환경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⁸⁾되어 있고, 환경산업협회는 환경산업 관련 민관협력 추진·해외 진출 지원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환경산업협회의 실제 회원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고려하여 현행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5(환경산업협회의 설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5.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기업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9)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2024년 예산 8억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법을 정비하려는 취지임.

② 안 제15조는 환경전문공사업자 중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유예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209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③ 안 제15조의2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업정지 사유인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비교적 고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 중지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금전적 제재로 대신하려는 것이므로,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환경오염 예방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업법례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③ 안 제16조의4는 비영리법인이 실제 환경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법」상 회사가 아니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현행법 제16조의5¹¹⁾에 따른 지원(정보제공 및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상 회사가 아닌 자도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서, 제도의 저변 확대, 공익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환경컨설팅 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에도 등록 범위를 「상법」상 회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¹²⁾.

⑤ 안 제16조의6은 안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대상이 확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되므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사후관리 대상 추가 및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등(안 제28조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안 제28조는 환경산업체 및 환경기술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에 따라 동 규정을 근거로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1조는 환경부장관의 업무 위탁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32조 및 제33조는 개정안의 변경사항(실용화를 사업화로 수정 등)을 반영하고, 포상 대상자를 구분하여 규정(설계기법을 도입한 자와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사후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사후관리)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보조·융자받은 자 ② ~ ④ (생략)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u>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u>한국환경산업기술원</u>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u>한국환경산업기술원</u>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u>한국환경산업기술원</u>	2.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u>소속기관</u>----- -----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u> <u>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u> <u>1의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u> <u>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u> <u>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u> <u>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u> <u>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u> <u>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u>	

현행	개정안
<u>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u> <u>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u> <u>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u> <u>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u> <u>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u>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현행	개정안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u>기관</u> 또는 단체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u>실용화한 자</u>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신설> 3.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3. ----- ----- <u>법인</u> ----- -- 제33조(포상) ----- ----- ----- ----- -----. 1. ----- ----- <u>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u> -----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u>생산·유통·사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① 안 제28조는 정부로부터 창업자금이나 사업화 자금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환경산업체 등에 대하여 업무 처리현황 보고, 정부출연금 등

의 사용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안 제31조는 현행법이 환경부장관의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업무 위탁사항 추가·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업무위탁 규정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주요 환경 관련 법률¹³⁾에서도 환경부장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환경정책기본법」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개정 조항 관련 사업 개요

(1) 녹색전환보증사업 (제6조제3항)

□ (추진배경) 녹색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재정융자, 이차보전 등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환경분야 중소기업 지원 제외

- 녹색산업 영위 기업의 제도권 금융지원을 위한 전용 보증 공급 필요

□ (사업내용)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저탄소 전환 및 녹색분야 금융지원 확대 유도

- (기후대응보증)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사업화, 연료·공정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 기업에 보증 공급

- (녹색기술산업보증) 담보력이 열악한 창업초기 녹색산업 영위기업, 환경기업 등에 대한 보증 공급

○ (사업기간) '25년 ~ (통합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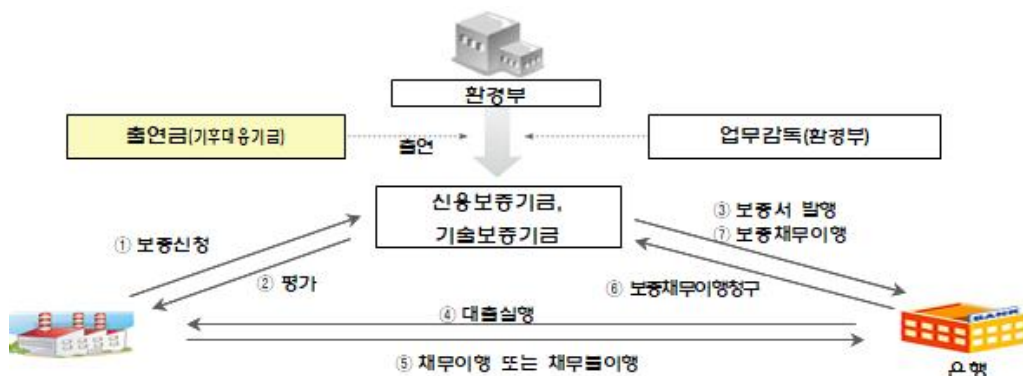
* 기후대응보증(금융위·중기부) + 녹색기술산업보증(신설) → 녹색전환보증(환경부)

○ ('25년 예산안) 1,400억원(보증 공급규모 1.5조원 / 기후대응기금)

* 기후대응보증(1,000억원, 1.2조원), 녹색기술산업보증(400억원, 0.28조원)

○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출연)

* ❶기후대응보증: 신보, 기보 / ❷녹색기술산업보증: 기보



(2)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제6조제5항)

□ **(사업개요)** 정부 출자금과 민간 투자금을 결합하여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투자펀드 조성

- 결성액의 70% 이상을 미래환경산업을 영위* 하는 주목적 투자기업에 투자해야 함('17~'18 60%, '19~'24 70%)

- * ①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및
-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전환에 기여하는 산업(사업공고시 정의)

□ **(의의)**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환경산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강소환경산업체에 투자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

- * 국내 벤처투자금액 6.6조원('15~'17)의 1.9%만 환경분야에 투자(벤처캐피탈협회)

□ **(추진현황)** '17~'23까지 10개 자펀드 총 3,240억원 조성('24.6월 기준)

- 환경부 1,878억원을 출자하여 3,240억원의 10개 펀드를 결성하였고, 86개사에 2,033억원 투자(2년이상 투자, 총 5년 이상 존속, 청산펀드 없음)

□ **사업 운영체계**

- ① 환경부는 펀드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계정에 출자
- ②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은 출자 받은 모펀드의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
- 운용사 모집공고 → 1·2차 선정평가 → 최종 선정
- ③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금(출자자)를 유치하여 자펀드 최종 결성



(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지원사업 (제6조제6항)

□ 목적

- 양질의 일자리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환경산업계의 인식 확산

□ 신청자격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 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

※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했거나,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법 위반기업, 공공부문 업종(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등)의 기업 등은 신청 제한

□ 선정 방법 및 지원 내용

- 서류 검토된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보기업 검증 및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및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후보기업 선정

- 환경부 장관 표창

- 근로환경개선금 지원(기업당 15백만 원, 총 1억 5천만 원)

- 근무환경(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및 복지시설(휴게공간, 체력단련 등) 개선 지원
- 근로 안전 시설 개선 및 안전 물품(소화기·안전복·자동제세동기 등) 구입 지원
- 직원 교육비 활용

□ 으뜸기업 선정·지원 현황

연도	신청·접수	서류검토(적합)	선정	근로환경 개선금
2021	111개사	79개사	10개사	15백만원/기업
2022	68개사	42개사	10개사	15백만원/기업
2023	40개사	31개사	10개사	15백만원/기업

(4) 환경산업체 창업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제6조의2)

□ 사업개요

- **(목적)** 환경분야 창업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성장)창업기업의 아이디어, 기술 구체화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창업 안정화와 성장지원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 **(사업규모)** '24년 193억 원, 180개 과제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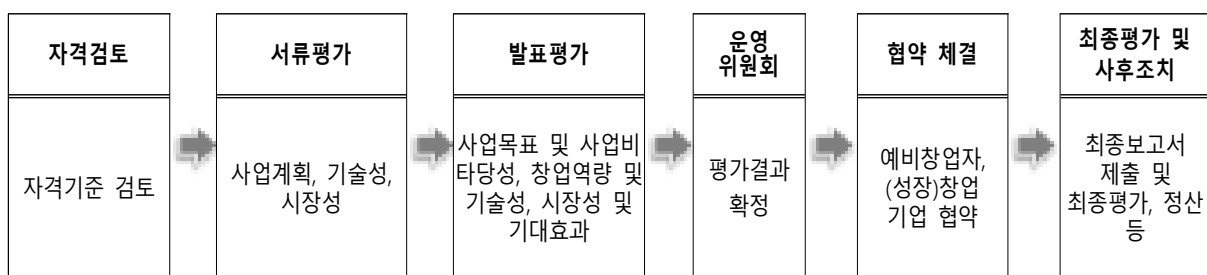
- **(사업화 자금 지원)**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지원금액
①예비창업자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	0.6억원 이내
②창업기업		1.2억원 이내
③성장창업기업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	2.5억 원 이내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사업화 역량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지원 내용
①창업교육	- 사업전략 수립, 팀빌딩, 기업회계·세무, 마케팅 등 창업 소양 교육
②멘토링	- 창업활동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1대1 상담 매칭
③컨설팅	- 사업 아이템의 시장검증분석 및 투자유치 활동(IR) 지원

□ 추진절차



(5)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안 제6조의3)

□ 사업목적

- 우수기술 보유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로 초기 시장 진입 촉진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24년 30,450백만원(전년동)
- (지원 분야) 환경 분야

구분	분야	세부 분야
사업화	청정대기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스마트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기후대응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 ₂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자연·생활환경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녹색신산업	바이오가스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초순수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환경AI·ICT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미래폐자원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지원비율) 국비 70%(이하), 자부담 30%(이상)
- (지원 금액)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9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요건
사업화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기술 컨설팅, 경영 컨설팅	최대 0.5억 원	-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최대 1억 원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국가 R&D 성공 또는 특허 출원, 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등), TRL 6 이상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및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2억 원	
		인·검증	판매 필수인증 또는 과제 관련 정부 인·검증 취득비용	최대 1억 원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자금유치 컨설팅	최대 0.5억 원	-
녹색신산업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기술 컨설팅,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지원요건 없음 (단,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시 기술이전 관련 서류 필수제출)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및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인·검증	판매 필수인증 또는 과제 관련 정부 인·검증 취득비용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자금유치 컨설팅		

(6)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7조의6)

□ 사업목적

- 우수한 환경기술·제품 생산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고 기업 브랜드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비)** 860백만원('24)
- **(주요내용)**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대상)** 녹색산업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 **(브랜드 제고)**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정기업 홍보물 제작, 언론 홍보 등 지정기업 기술·제품 홍보 지원
 - **(해외진출 강화)** 환경박람회 환경기업 홍보관 운영,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우수환경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인센티브 확대)** 환경기술개발, 금융, 사업화 및 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지원사업 연계

□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기업 수)

구 분	'19	'20	'21	'22	'2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누적)	12 (22)	12 (34)	13 (47)	14 (61)	13 (64)

(7)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제13조의4)

□ 배경 및 근거

- **(배경)**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제반 사항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역량강화 도모
- **(근거)** 「환경기술산업법」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원실적

연도	계	'20	'21	'22	'23	'24
지원 기업수 (개사)	135	14	33	31	32	25
수출실적 (억원)	3,045	313	979	654	1,099	추진중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 **(예산)** '24년 6,000백만원
 - (산출내역) 전략수립 1억원×6개사, 역량강화 3억원×10개사, 판로개척 2억원×9개사
- **(지원대상)**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비율)** 매출액 구간별 국고보조금 최대 50~70% 지원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최종평가	진도 /성과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1월	1~2월	(선정평가) 2월 : 신규사업 평가 (최종평가) 12월 : 종료사업 평가	7~8월	익년 2월